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0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나경원 · 백종헌
강대식 · 고동진 · 김상훈
진종오 · 주호영 · 유용원
김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,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.

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,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,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,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,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고등학생

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하여 주려는 것임(안 제59조의2제1항
및 제59조의4제3항제1호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“25만원”을 “35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55만원”을 “65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55만원”을 “65만원”으로, “4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)가 3명 이상인 경우로서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
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공제대상자녀”라 한다)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	제59조의2(자녀세액공제) ① ----
1. 1명인 경우: 연 <u>25만원</u>	1. ----- <u>35만원</u>
2. 2명인 경우: 연 <u>55만원</u>	2. ----- <u>65만원</u>
3. 3명 이상인 경우: 연 <u>55만원</u>	3. ----- <u>65만원</u>
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<u>40만원</u> 을 합한 금액	50만원-----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.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	③ -----

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

1.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· 직계비속 · 형제자매 · 입양자 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 “직계비속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· 중 ·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
가. ~ 라. (생략)

[illegible][illegible]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 2. · 3. (생 략) ④ ~ ⑪ (생 략)	<u>마.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</u> <u>는 자녀(입양자 및 위탁아</u> <u>동을 포함한다)가 3명 이</u> <u>상인 경우로서 초 · 중 · 고</u> <u>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</u> <u>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</u> <u>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</u> <u>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</u> <u>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</u> <u>으로 정하는 금액</u> 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⑪ (현행과 같음)
---	--